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6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전진숙·서미화·조인철

박정현 · 황정아 · 정진욱

이수진 • 오세희 • 강선우

김남희 • 이광희 • 이재관

임미애·허 영·양부남

소병훈 · 김영배 · 장종태

박희승·최민희·김 윤

문대림 • 민형배 • 서영석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,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, 지방의료원을 신축·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,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지역주민의 건강증진,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,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"의료는 공공재"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 속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,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4항단서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1968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"를 ", 변경등기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·절차 등에"로 한다.

다만,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설립 및 등기) ① ~ ③	제4조(설립 및 등기) ① ~ ③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	4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	
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, 지			
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, 사			
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			
여야 한다. 이 경우 검토의 방	<u><후단 삭제></u> 다만,		
법・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	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	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단서	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		
<u>신설></u>	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		
	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		
	경우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에		
	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		
	서 제외한다.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	
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	6		
설립등기, 분원의 설치등기, 이			
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	<u>,</u> 변경등기 및 제4항에		
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	따른 검토의 방법・절차 등에-		
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			
통령령으로 정한다.	,		